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1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력진흥과 김종철 과장(044-203-5260) 김창연 주무관(5271)

‘아낀 전기’ 전력시장에 팔 수 있다.

- 연간 목욕탕 약 600여만원, 빌딩 650여만원 수익 창출 -
- 11월 25일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, 에너지 신산업 시동 -

□ 앞으로 **목욕탕, 빌딩, 마트, 공장** 등에서 **아낀 전기**를 **전력시장에 판매**해 새로운 **수익을 창출**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

○ 또한, 전기사용자는 **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전기소비를 감축할 경우 수익**을 얻을 수 있으며, 아낀 전기를 팔기위해 수요관리사업자로부터 **필요한 설비를 제공 받을 수 있다.**

○ 올해 말 시장에 참여 예정인 **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모 사우나**의 경우, **‘아낀 전기’ 판매 수익 485만 원**, 전기사용을 줄여 얻는 **전기요금 감소금 103만 원** 등 **연간 총 588만 원의 수익을 창출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 전기사용자 예상수익>

▶ **목욕탕**(90kW 감축계약) : **588만원** (아낀전기 판매 485만원 + 전기요금 절감 103만원)
▶ **빌딩**(100kW 감축계약) : **655만원** (아낀전기 판매 540만원 + 전기요금 절감 115만원)
▶ **마트**(50kW 감축계약) : **327만원** (아낀전기 판매 270만원 + 전기요금 절감 57만원)

※ 수요관리사업자 수수료 제외 (설비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율은 높아짐)

□ 한편, 소비자들의 전기소비절감을 시장에 거래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**'수요관리사업자'**들은 빌딩, 아파트, 공장 등 **전기사용고객이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한전에 판매**하고, **판매수익을 고객과 공유**하게 된다.

○ 또한, 수요관리사업자들은 **실시간 전력계량기,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** 등 정보통신기술(**ICT)기기를 제공**하는 한편, **에너지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**를 제공한다.

○ 아이디알서비스(IDRS), 벽산파워 등 **11개 사업자**가 **연내** 개설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(일명, 네가와트(Negawatt) 시장)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.

< 수요관리사업자 >

◈ 빌딩·아파트·공장 등 전기사용고객이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, 판매수익을 고객과 공유 (수수료 형태)

◈ 필요시 실시간 전력계량기,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 등 시장참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(ICT) 기기를 제공하며, 에너지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제공

※ 아이디알서비스(IDRS), KT, 벽산파워, 에너녹 등 약 20개 사업자 시장진입 예정 ('15년)

□ **전력거래소**는 **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시장규칙 운영과 정산**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'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(안)'을 승인(11. 3.)하면서, **'아낀 전기'**를 **전력시장에 판매** 할 수 있는 **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올해 11. 25, 개설**하기로 했**다**.

○ 이는 올해 **'경제혁신 3개년계획'**에 **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**을 발표한데 이어, 지난 7. 17. 발표한 **'기후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'의 6대 신산업** 중 하나로 **'네가와트 시장'**을 포함시켰다.

○ 또한 9. 4. **「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」**에서 **11월 중 '아낀 전기' 거래시장을 개설**하기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가시화한 성과다.

□ **한편,**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**대기업 계열사들의 수요관리자원 참여 비중을 제한**하고, 한전이 보유한 전기사용자의 **실시간 전력소비 데이터**에 대한 **수요관리사업자들*의 접근성도 보장**할 계획이다.

* 수요관리사업자 : ('14년) 총 11개사, ('15년) 총 19개사 (세부명단 붙임1 참조)

○ 또한, 향후 중국·인도 등 **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에** 수요관리사업자들이 **국내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진출**할 수 있도록, **국제기구 지원사업 연계**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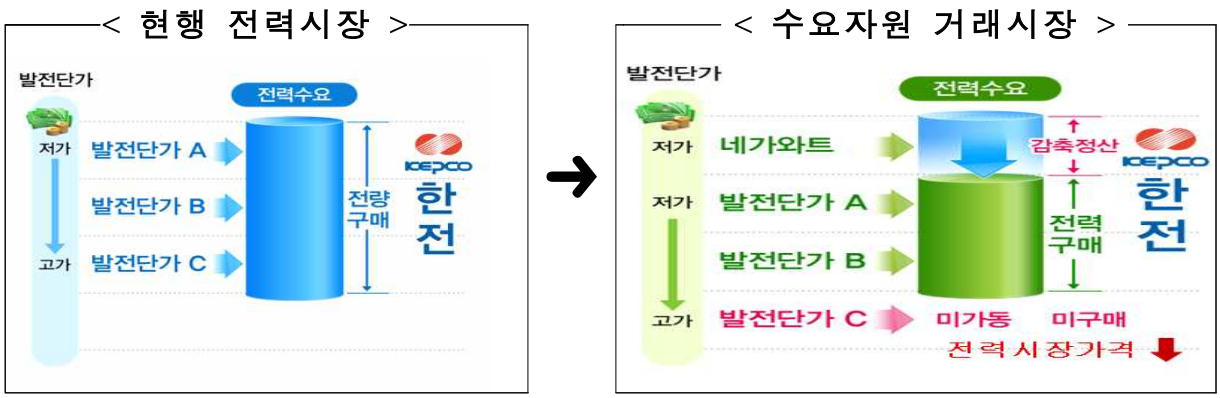
□ 이번 수요자원거래시장이 개설되게 되면, 일반 국민들 스스로가 **전기를 아끼는 것**을 통해 **수익을 창출**하는 한편, 민간의 **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투자**와 에너지 기반의 **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이** 창출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
○ 또한, **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이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**을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.

- 현재의 전력시장은 **발전사**들만이 **전기생산비용(원/kWh)과 공급가능량을 입찰하여 거래**하는 방식이다.

- 하지만, 앞으로는 **수요관리사업자**들이 매개자가 되어 사무실, 빌딩, 공장 등 **생활 속**에서 **절감된 전기를 모아 감축량을 입찰**하여 발전기와 동등한 가격경쟁을 통해 **'소비감축량'**도 생산된 전력량과 같이 **'자원'**으로 인정하고 거래할 수 있다.

【 전력시장 변화 개념도 】



※ (전력거래소)발전기의 입찰가격이 아낀 전기의 절감가격보다 높은 경우, 전기 절감을 지시 → **전력공급비용 감소, 전기요금 인상요인 감소.**

○ '아낀 전기' 판매는 전력공급비용 절감을 통한 **전기요금 인상요인 감소, 온실가스 배출과** 송전선 등 **전력설비가 필요 없기** 때문에 장기적으로 **사회적 비용감소**를 통한 국가적 편익 발생이 기대된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**를 통해 **'17년 약 190만 킬로와트(kW), 엘엔지(LNG) 발전기 4기 규모**의 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수요자원 시장거래를 통한 **전력구입비용 감소, 안정적 전력수급의 외부효과 발생** 등 잇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**한국전력공사**로 하여금 **중소사업자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**기로 했다.

○ **부산권**(11. 5.)**을 시작**으로 **전국 5개 권역별 수요자원 거래시장 설명회를 개최***하고, **지사 담당자별 1:1 멘토링**을 통해 **창업희망자, 영세사업자의** 수요자원 거래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.

* 부산권·호남권(11월 첫 주), 경북권·충청권·수도권 (11월 둘째 주) / 멘토링 프로그램 (11월 이후)

참고자료 1.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 수요관리사업자 리스트

참고자료 2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방안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창연 주무관 (☎ 044-203-52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 수요관리사업자 리스트

□ '14년 참여예정 수요관리사업자 (11개사)

No.	사업자명	주소	연락처
1	그리드위즈	경기도 성남시	031-698-3485
2	그리드파워	서울 강남구	02-2058-0405
3	매니지온	인천시 연수구	032-431-0066
4	벽산파워	서울 구로구	02-767-6749
5	사룬	부산 부산진구	051-987-1042
6	아이디알서비스(IDRS)	서울 강남구	02-3468-3821
7	에너녹(ENERNOC)	서울 중구	02-6190-5847
8	에너클	경기도 성남시	070-7644-6161
9	엑티브넷	서울시 강남구	02-3413-5363
10	케이티(KT)	서울시 종로구	02-730-0392
11	한국가상발전	제주시	070-7268-0071

□ '15년 상반기 참여예정 수요관리사업자 (8개사)

No.	사업자명	주소	연락처
1	지에스파워(GS파워)	서울 강남구	02-2005-4057
2	아이피티리서치 (IPT Research)	경기도 안양시	031-343-0123
3	엘에스산전(LS산전)	경기도 안양시	02-2034-4273
4	파워텍발전기	부산 강서구	051-325-0012
5	한국산업기술컨설팅	서울 중구	070-7787-1018
6	한국에코산업	울산시 남구	052-266-1772
7	효성	서울 마포구	02-3668-5836
8	한화S&C	서울 중구	02-729-4557

※ 가나다 순 정렬

붙임2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방안

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방안

2014. 11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산업통상자원부

목 차

Ⅰ. 도입 배경 ····· 1

Ⅱ. 운영 방안 ····· 2

Ⅲ. 공정한 시장 환경조성 ····· 3

Ⅳ. 기대 효과 ····· 4

※ 참고. 수요자원 거래시장 세부설계 ····· 5

Ⅰ 도입 배경

□ (정책환경 변화) 공급위주 정책의 한계 + 전력기반 新시장 창출

○ 지속적인 **전력수요 증가**와 **전력공급설비 확충 곤란*** 등으로 인해 **수요관리**를 통한 **'효율적인 전력수급'**으로 정책으로 전환 불가피

* 기존발전소 부지 고갈, 전력설비 기피, 환경규제 강화, 원전 안정성 우려 증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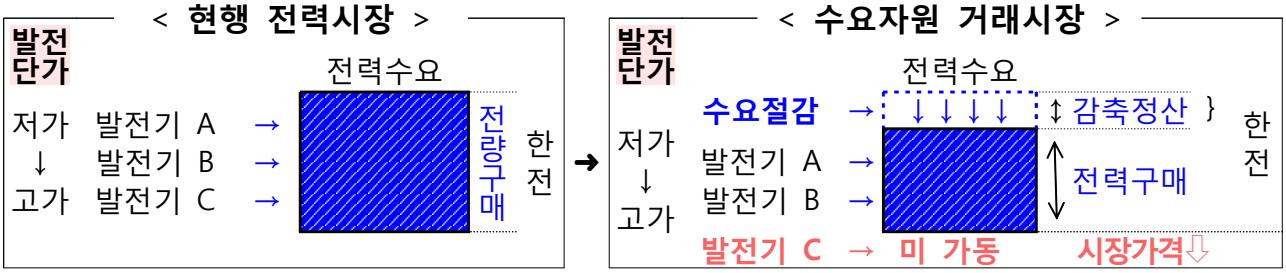
○ 전력망에 ICT 기술을 융합한 **에너지 新산업 육성**으로 **민간의 자발적인 참여**를 통한 **새로운 부가가치** 및 양질의 **일자리 창출**

* '에너지新산업 창출방안' VIP 보고 (국과위, 7.17), 에너지新산업 대토론회(VIP 참석, 9.4)

□ (수요시장) 수요반응자원(네가와트)과 발전자원(메가와트)의 가격 경쟁

○ **(사업모델)** 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소비 절감량을 **발전기와 가격 경쟁**하여 **전력시장에 입찰,** 낙찰시 **감축정산금**을 통한 수익 창출

* **수요감축 단가 < 발전단가일 경우,** 발전 대신 **수요감축 지시(전력거래소)**
→ **전력구입비 감소**(한전), **감축정산금**으로 수익 창출(수요관리사업자)



○ **(편익효과)** 전력수급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경제적 편익 발생

① **수요관리사업자** : 공장, 빌딩 등 수요자원 모집·관리(전력시장 입찰 대행 등)에 대한 수수료 수익 창출 (실적금 + 기본금의 일정비율, 통상 20%)

② **판매사업자(한전)** : 전력구입비 절감과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

③ **소비자** : **(수요자원)** 자발적인 수요감축으로 요금 절감·수익 창출, **(일반소비자)** 한전의 구입전력비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

II 운영 방안

□ 기본방향

○ **수요자원거래시장을 통한 수요반응자원의 신뢰성을 입증한 이후,** 적정시점에 전력수급계획상 발전자원과 동등한 지위 부여

< 추진 로드맵 >

	기존 제도	도입 단계	통합 단계
제도	주간예고, 지능형DR 등	**수요자원 거래시장**	
참여자원	**수요자원**	**수요반응자원** ①하루전시장 입찰 ②한시간전 감축 지시	· **경제성DR** · **신뢰성DR**
활용	예비력 확보	· 신뢰성 높은 **피크수요 감축** · 전력시장 **정산금 절감**	
보상방식	· **기본급** · **실적급**		·(경제성DR) 전력시장가격 ·(신뢰성DR) 용량요금 +최고변동비
보상수준	부하관리사업별 기금지원 단가	**시장 메커니즘** (도입초기에는 기존 제도의 보상수준 연계)	
재원	기반기금	**전력시장**	
사업구조	-	기존 수요관리제도와 병행 유지	전력시장으로 통합
전력수급 기본계획	수요감축량 반영		설비자원 반영

□ 세부 운영방안

① **(시장가격 결정) 자발적으로 하루전시장에 입찰 → 발전단가보다 저렴할 경우,** 감축계획량 할당(낙찰) → 당일 의무적 부하감축

☞ **전력시장가격(SMP) 인하에 따른 전력공급비용 절감**

② **(최대부하 감축)** 실시간 급전운영 시 발령조건이 충족될 경우 **감축지시 발령(1시간전)** → 감축지시량에 따라 의무적 부하감축

☞ **정전 예방** 및 **최대전력 삭감**으로 **계획 초과정산금(CON) 절감***

* 발전기 고장 등 수급상황 급변시 가동되는 고비용발전기(CON) 대체
(유류발전기 : 469원/kWh, 소형열병합발전기 : 277원/kWh vs 수요자원 : 약 200원/kWh)

Ⅲ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

가. 대기업 참여 제한

◇ **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한 시장실패를 예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 ⇒ 건전하고 창조적인 시장 조성**

□ **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**

○ 대기업인 수요관리사업자가 **계열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요감축자원의 비율 제한** (30%,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)

* 상속·증여세법,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의 계열사 거래 제한비율 준용

□ **대용량 전기소비자의 수요시장 참여자격 요건 마련**

○ 일부 대기업에서 **자기감축수요자원만**을 가지고 수요시장에 참여할 경우, **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**로 작용할 우려

☞ **최소 10개소 이상의 자원 등록** 필요 규정 (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)

나. 한전과 중소수요관리사업자간 상생협력

□ **한전 지역본부별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**

○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지역설명회 개최 등 ('14.11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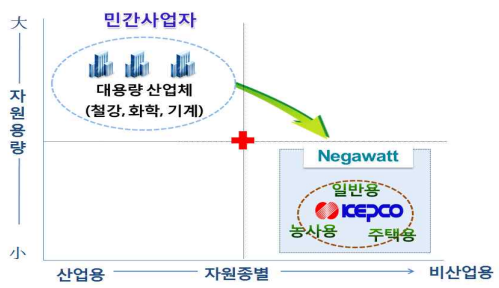
□ **기금 기반 수요관리사업과 수요자원 거래시장 병행 참여 금지**

○ 기금기반 수요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,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시 대상 수요자원 제한 ⇒ 일반 수요관리사업자와 경쟁 대상 차별화

<민간사업자 Only(예상)>



<민간사업자 + 한전 참여(예상)>



Ⅳ 기대효과

□ 수요추종형 **공급중심**에서 **수요관리 중심**의 **에너지정책**의 성공적 **전환** 촉진, 민간의 자발적 참여·투자 활성화

○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 등 **스마트그리드 핵심기기**의 활발한 **보급**과 에너지컨설팅 등 **신규 부가서비스 창출** 기대

□ **'17년 190만kW, 총 LNG 발전기 4기 발전량 확보**를 통해 신규 피크발전기 투자 회피 및 단기 전력수급 불확실성 제거

○ 장기적으로 **대규모 전력공급설비 회피 및** 기후변화 대응 관련, **탄소배출 저감** 등 국가적 편익 발생

□ 에너지·ICT·서비스가 융합된 **新산업의 비즈니스모델** 검증 및 향후 글로벌 수준의 수요관리사업 수출화 추진



참 고 **수요자원 거래시장 세부설계**

◈ 「초기시장 활성화」를 중점 추진하되, 「신뢰성 확보」를 병행 고려
– ①시장 규모, ②수요자원 거래요건, ③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

1 '수요자원 거래시장' 시장규모

□ (최대규모) 단기적으로 350만kW ⇨ 총 설비용량 8,600만kW의 4%

○ 미국, 프랑스 등 선진국은 **총 설비용량의 3~5%**를 최대량으로 설정

* 최대량 산정시, 전력수요패턴・발전자원구성・최대부하・기존수요자원 등을 검토

☞ **매년 수요자원 최대 규모 산정**을 통해 **시장의 효율적 운영** 및 **수요관리에 대한 방향 제시**로 사업자 안정성 향상 필요

< 해 외 사 례 >

◈ 계통운영자 국제연합체(Grid Operator-15) 수요자원 최대 규모
① 미국 동부 4.7% ② 스페인(REE) 5% ③ 프랑스(RTE) 3% 등

* 수요자원의 고도화, 불규칙한 발전자원(신재생 등)이 많을수록 수요자원의 최대 규모가 커짐

** 최근 미국은 수요자원 가치를 재평가 ⇒ 감축시간 제한이 있는 수요자원은 적정 수준으로 규모를 제한, 감축시간 제한이 없는 수요자원은 제한하지 않음

□ (단기목표) '17년 190만kW 확보(국과위 보고(7.17), 에너지 대토론회(9.4))

○ **타 프로그램**(주간예고・지정기간 등) **단계적 통합***, **확산사업**을 통한 신규자원 창출, **신뢰성 검증** 등을 통한 적정 수요자원량 관리
⇨ **(사업초기) 낮은 장벽, (후기) 필요시 규제 검토**

※ 1단계 : 지능형수요관리・수요입찰 ('14.11월) ⇒ 2단계 : 지정기간・주간예고 ('15년~)

2 수요자원의 거래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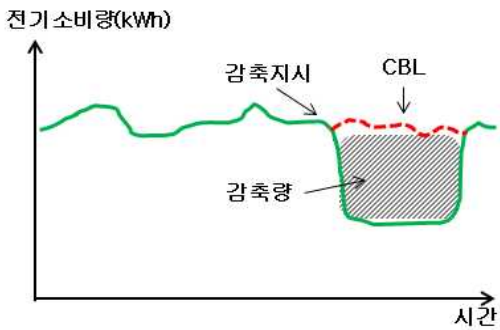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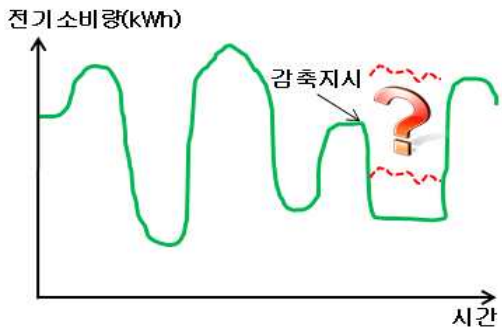
① 수요자원의 등록기준 · 사후관리
② 수요감축보상 (실적금 · 기본금)
③ 감축 미 이행에 대한 패널티 (위약금 부과 · 거래정지 명령 등)

1. 등록기준과 사후관리

□ (신뢰성기준) **정확한 감축량 산정, 무임승차 방지**를 위한 최소요건

○ **모든 수요자원**에 **전기소비패턴 선별**을 위한 **테스트***를 실시하되, 사업초기 현실을 고려하여 **30% 기준 적용**(미국 20%, 경제성DR만 적용)

* 전기소비편차(RRMSE) : 편차가 낮을수록 전기소비패턴이 규칙적, 신뢰성 ↑

구분	규칙적인 전기소비패턴	불규칙적인 전기소비패턴
개념		
특징	· 감축량 평가의 정확성 향상 · 수요자원의 실효성 검증	· 감축량 평가의 정확성 문제 발생 · 정보의 비대칭성, 도덕적 해이 문제

□ (최소용량기준) 수요자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최소용량 설정

등록기준	비고
① 수도권.비수도권 구분 ② 최소 10MW 이상 등록	. 화력발전기와 경쟁을 통해, **최적화된 발전계획 수립 가능** * 발전기 등록기준 : 수도권·비수도권 구분, 20MW
③ 최소 10개 전기수용가 이상 등록	①수요반응자원의 **신뢰성 강화** * 등록자원수가 많을수록 자원의 신뢰성 ↑ ②대규모 전기수용가(대기업)의 **단독 시장참여 방지**

□ (사후관리) 등록된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신뢰성 검증·유지

○ (검증시험) ①등록시험, ②점검시험 실시

구 분	시험 항목	시기 . 방법
등록시험	① 1시간 이내 감축가능 여부	. 최초 자원등록 후, 2주 이내 1시간전 감축지시 발령
	② 등록용량(Volume)	
점검시험	③ 감축지속능력	. 동, 하계 수급대책기간 이전, 2시간 이상 감축지시 발령 * 비 피크기간 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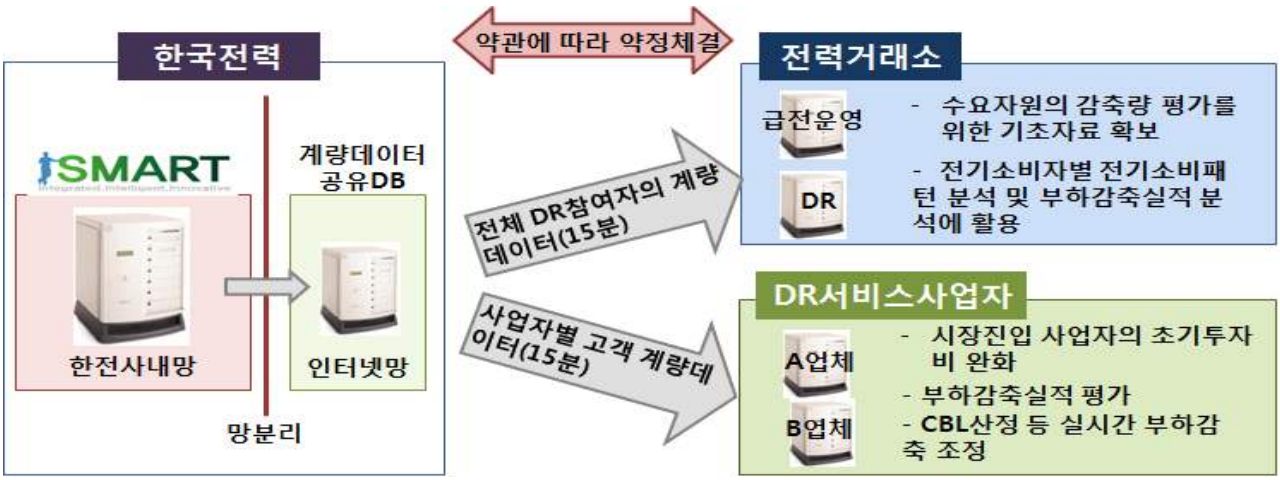
○ **(자료제출)** 수요자원의 **실시간**(5분) **전력데이터 거래소 제출**('17년~)

- 사업자는 실시간 전력계량데이터 취득을 통해, 거래소의 감축지시에 대해 **능동적으로 부하감축량 조정을 통한 사업 안정성 강화 가능**

* 시장초기 신규 수요관리사업자의 **한전의 정보공유 인프라**(i-smart, 15분 **전력소비 데이터**) **활용 지원**

- 수요자원 운영시스템, Gate-way, 통신시스템 등 실시간 계량데이터 취득·분석을 위한 **ICT 장비 개발·보급 확대 전망**

< 한전 정보공유인프라 구축 및 활용(안) >



2. 정산금 : 실적금 + 기본금

◇ 향후 **전력시장**에서 **발전자원**(메가와트)과 **수요반응자원**(네가와트)**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산방법 시행**

가. 실적금

□ 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따른 **수요감축량에 대한 정산**

○ **(감축량평가)** 공장·건물 등 개별 수요자원의 시간대별 전력소비 예측값(CBL)과 감축일 계량값간 차이의 총합을 시간대별로 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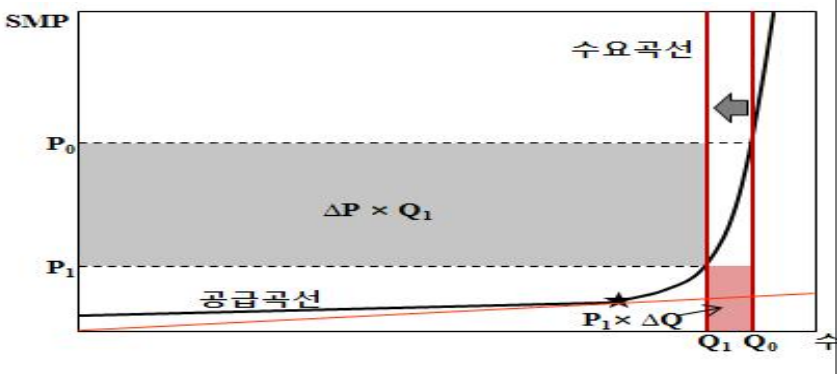
① **유형1(시장가격 결정)** : 실제감축량(△kWh) X 전력시장가격(SMP)*

* 하루전 전력시장에 참여 ⇒ 발전기와 가격경쟁을 통해 전력시장가격 하락에 기여

② **유형2(최대부하 감축)** : 실제감축량(△kWh) X 감축시간 최대변동비*

* 1시간내 감축지시에 응동하여 최대피크 삭감, 수급불안정에 대응

○ **(참여조건) 전력시장에서 입찰**하는 경우, **사회적 순편익**(전체 전력 구매비용 절감 > 감축정산금)**이 발생하는 가격수준**(NBT[1])에서만 참여

개 념	산출식
	ΔP × Q1 (수요자원으로 인한 **전력구매비용 절감액**) > P1 × ΔQ **(수요자원 정산금)**

1) NBT(Net Benefit Test) : 수요반응이 유발한 도매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판매사업자의 이익이 수요자원에게 시장가격(SMP)로 보상하는 비용보다 크게 되는 최소의 도매시장가격을 찾는 방법

나. 기본금

□ **(목적) 감축지시에 단시간(1hr)**내 감축 가능한 수요자원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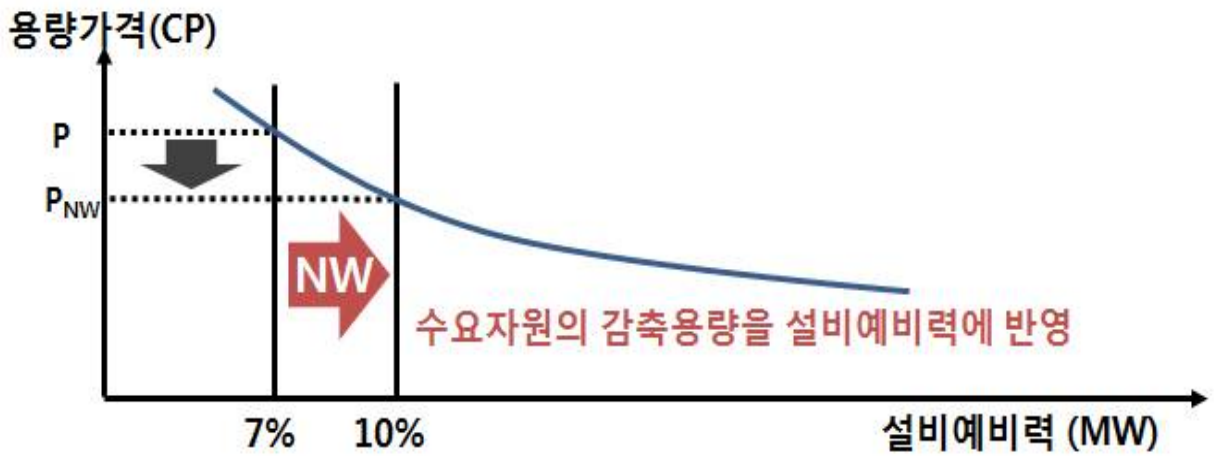
○ 수요감축에 따른 **조업손실 보상,** 수요자원의 **스마트그리드 설비 투자 촉진** 등 **계통운영의 안정성 확보**를 위해 **기본금 지급**

□ **(정책방향) 先 수요자원의 신뢰성 강화, 後 발전자원과 동등한 보상**

○ 수요반응자원의 **신뢰성을 강화**하고 **기존 보상수준을 유지**하면서 **발전기와 경쟁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**한 후, **발전자원과 동등한 보상**

※ 현행 용량요금제도는 예비력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하락하도록 설계

⇒ 수요반응자원의 시장참여로 용량가격 인하·전력구입비 절감 기대



* 북미시장의 경우(PJM, NYISO 등) 신뢰성 수요자원에게 **발전자원과 동등한 용량요금을 지급**하여 **약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** (PJM, '13년 기준)

다. 감축 미 이행에 대한 패널티 : 위약금 부과 및 거래정지 명령

□ **(필요성)** 감축 미 이행으로 인한 **시장왜곡 방지를 위한 필수 장치**

○ 감축용량 **과다 등록** 또는 **전력시장 허위 입찰**로 인한 **시장가격 교란 가능성 예방** 등 **계통운영 신뢰성 유지** 필요

□ **(운영방안) 위약금 부과 또는 거래정지 명령**을 통해 감축이행 유인 강화

○ **감축 미 이행이 빈번한 자원**에 대해 **위약금 부과** 및 **용량정산금 환수**와 함께 해당 수요자원에 대한 **전력거래 정지** 명령

구 분		패널티(안)
위약금	유형① (시장가격 결정)	• 감축미이행량에 비례, **1배만큼의 감축 정산금** 환수
	유형② (최대부하 감축)	• 감축이행률이 0%인 경우, **연간 기본금의 2배 환수**
거래 정지	유형① (시장가격 결정)	• **거래일별 평균 감축이행률이 70% 미만** (3일 이상)
	유형② (최대부하 감축)	• **피크기간 평균 감축이행률 70% 미만**

※ 위약금 ① 기본위약금 $= \frac{\text{연간총용량정산금}}{\text{감축가능용량} \times \text{감축예상시간}} \times \text{감축미이행량} \times \text{위약금계수}$

② 실적위약금 = (가격발전계획량 - 감축량)× SMP × 위약금계수

○ 강력한 수준의 위약금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 중소기업의 재무적 위험완화를 위하여 **위약금 상한(월별 기본정산금) 적용**

* 단, **등록기준 및 거래정지 조건을 강화**하여 감축미이행 수요자원에 대해 **참여제한 및 조기 시장퇴출 ⇒ 사업 안정성 강화**